

연금보험료 ([]분기납 []선납) 신청서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전화번호			* 부호	
	주소 우(-)				
신청내역	분기납 희망기간		년 ([]1월, []4월, []7월, []10월) 분부터		
			년 ([]3월, []6월, []9월, []12월) 분부터		
	선납 희망기간		개월		

「국민연금법」 제8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분기납(선납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가입자)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

작성방법

- 색상이 어두운 란과 “*”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.
- “성명”란 및 “주민등록번호”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.
- “분기납희망기간”란에는 분기납신청자만 분기납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.
※ 분기납은 「국민연금법」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어업인만 가능하며, 해당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“선납 희망기간”란에는 선납신청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, 그 외에는 1년 이내로 선납 희망기간을 적으십시오.
※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은 선납하려는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.
-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매월 납부되는 연금보험료는 해당 월 연금보험료가 되며,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이자는 해당연도의 1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선납 신청기간과 실제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연금보험료 선납 신청 후 사업장가입자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사용자임에 따라 선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.

처리절차

